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940호 2013. 2. 1.(금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3호 인천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
규칙 -----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3년 2월 1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3호

인천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(이하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모범공무원 규정(대통령령 제6971호)에 의한”을 “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 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“부부동반”을 “가족동반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당액의”를 ”수당 금액의“로 한다.

제6조 중 “ 각호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“인천광역시 서구 및 서구산하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”구“라 한다) 및 구 산하기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